

『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하여 '06. 3. 24부터 시행되는 긴급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규정 (안 제2조)
 -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-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(안 제3조)
 - 긴급지원심의위원회구성(15인이내, 민간위원 1/2이상)
- 위원명단 공개(안 제4조)
 -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-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사유(안 제6조, 제7조)
 - 임기는 2년, 연임이 가능
 - 해촉사유는 사망, 질병, 장기출타, 본인이 원할 때, 품의손상 등

○ 회의 소집 및 의결(안 제9조)

- 안 제2조의 사항 심의 또는 의결 필요시,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시
- 의결 : 재적위원 1/2 참석, 참석위원 1/2 찬성

4. 참고사항

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
○ 긴급지원담당공무원지정·보고 및 관련조례 제·개정 표준안
(보건복지부)

- 도 사회노인복지과 - 3979('06. 2. 24)호와 관련임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하여 2006. 3. 24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연장 결정 등을 심의·의결하고
-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을 1/2이상인 되도록 하였으며,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음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한 등
- 위원의 해촉, 회의소집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

- 안 제3조제3항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
①사회보장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자 ②사회복지
관련기관 5년이상 종사한 자 ③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
하는 자 ④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에 관심있는 시의원으
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됨